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 가. 수소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시행과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수소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5조~안 제12조)
다. 수소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3조)
라. 수소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4조)
마.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5조)
바. 수소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7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는 충청북도 수소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 11월 9일 제정되었음
- 작년 5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 18개국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가 출범했는데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으로 추대되어 국제적으로 수소경제를 주도할 환경이 마련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자원 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나. 조례안의 주요 개정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4조**는 ‘수소산업 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현행 조례는 수소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5년 단위 발전계획과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으로 수소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분석 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2항에서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업무 담당 과장**으로, 제4항에서 간사를 충북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센터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격하**’한 것과

- 제5항에서 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은 관(官)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이것은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은 설득력은 있으나,
- 수소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民間)주도가 아닌 관(官)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 경직된 위원회 운영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 제척 등의 사유를 강화(제1호)하거나 완화(제3호)하여 규정하였음⁶⁾
-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 감정 외에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생략)	2. (생략)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산업 육성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통일하여 정비한 것으로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수소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위원회 구성을 현행 조례와 비교했을 때 ‘격하’한 것,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